

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

- 신청대상: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 - 단,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사실조사 후 지급
 -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(컨테이너, 비닐하우스, 농막, 체류형쉼터 등)에 전입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- 지원내용: 개인당 매월 15만원씩 연천사랑상품권(카드형)으로 지급
 - 최초 지급시기: 2026년 1분기 내
 -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(미사용시 자동 소멸)
- 신청기간: 2026. 1. 1. ~ 2027. 11. 31.
 - 대리신청방법 및 신청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- 신청방법: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방문처	담당자 전화번호	비고
연천읍 행정복지센터	839-4622, 4623, 4624, 4612	
전곡읍 행정복지센터	839-4625, 4626, 4627, 4628, 4525	
군남면 행정복지센터	839-4629, 4630, 4619	
청산면 행정복지센터	839-2793, 2794	
백학면 행정복지센터	839-4631, 4632	
미산면 행정복지센터	839-4633	
왕징면 행정복지센터	839-4634	
신서면 행정복지센터	839-4635, 4636	
중면 행정복지센터	839-4637	
장남면 행정복지센터	839-4639	

- 사용처
 - 1권역(연천읍·중면): 전곡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
 - 2권역(전곡읍): 연천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
 - 3권역(청산면): 청산면 안에서 사용
 - 4권역(신서면): 신서면 안에서 사용
 - 5권역(군남·미산·왕징면): 군남면, 미산면, 왕징면 안에서 사용
 - 6권역(백학·장남면): 백학면, 장남면 안에서 사용
- ※ 중심지(읍) 집중 업종인 병원·약국·학원·안경점은 군 전체 사용 허용